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03
------	------

2020. 11. 25.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0월 14일, 강동길 의원(찬성의원 9명)

나. 회부일자 : 2020년 10월 14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2020. 11. 25.)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서윤기 의원)

1. 제안이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각각 이원화된 벤처투자 제도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여 제정·시행(2020. 8.12.)됨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던 조례상 용어와 내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을 정의함(안 제2조제4호, 제5호).

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 함(안 제5조제2항).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투자 주체별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던 벤처투자제도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로 통합(2020.8.12.)됨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던 조례상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고자 발의됨.

나.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의 개요

-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해 1965년부터 운용되고 있음.
-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이 기금의 주된 기능이었으나, 2018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¹⁾을 근거로 조합에 출자하고 이를 별도의 재원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투자계정’을 신설하면서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분리·운용하고 있음.²⁾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제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4.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 또한, 출자대상을 기존의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조합에서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음.

< 투자조합의 개념 >

조 합	내 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한국모태펀드로서, 한국벤처투자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상호출자하여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 기업 직접 투자와 벤처캐피털 출자를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회사와 공동으로 결성한 벤처펀드

- 현재 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6개 분야의 혁신성장펀드³⁾에 출자하고, 이에 대한 운용과 관리는 서울산업진흥원이 대행하고 있음.
- 올해 혁신성장펀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에서 총 313억원을 출자해 총 6,661억원을 결성할 계획임.

2) 투자계정은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융자계정은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관임.

3) 혁신성장펀드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서울바이오, 문화콘텐츠, 창업지원, 재도전지원 등 6개 분야에 대해 서울시가 일정규모(펀드별 총 조성액의 10~20%)를 출자하고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 투자금을 합해 조성하며, 전문 펀드운용사가 펀드를 결성해 8년(투자 4년, 회수4년)동안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020년 혁신성장펀드 추진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4차 산업혁명	스마트 시티	문화 콘텐츠	창업 지원	재도전 지원	바이오
결성 예정액	6,661	1,497.5	1,950	504	956.5	1,253	500
서울시 출자액	313	72	72	36	68	45	20

다. 조례상 용어와 내용의 정비(안 제2조, 제5조, 제14조)

- 개정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개별법으로 각각 운영되던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이 벤처투자법으로 통합(2020. 2.11.)됨에 따라 조례상 용어와 내용을 이에 맞춰 변경하려는 것임.
- 안 제2조제4호와 제5호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정의를 벤처투자법 제2조 정의규정을 반영해 인용 조문과 일부 내용(창업자에 투자→벤처투자)을 정비하고 있음.
- 또한, 안 제5조와 안 제14조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용어를 각각 변경하고 있음.
- 이는 벤처투자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기존 법률에서 벤처투자 제도와 관련된 사항이 이관되거나 삭제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상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한국벤처투자조합(「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원화된 벤처투자 제도가 “벤처투자조합”으로 통합·일원화되면서 기존 법령에서 삭제되고,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명칭이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변경되었음⁴⁾.

<벤처투자법의 용어 변경>

기존		벤처투자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	벤처투자모태조합

- 개정안은 관계법령의 제명과 조항, 용어 등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즉시 반영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치 법규 접근성과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은 이 법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본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903
----------	------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14일

발 의 자 : 강동길 의원(1명)

찬 성 자 : 김수규, 이승미, 김춘례, 김혜련
김제리, 황인구, 이상훈, 최 선
양민규 의원 (9명)

1. 제안 이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각각 이원화된 벤처투자 제도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여 제정·시행(2020. 8.12.)됨.
- 이에 기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던 조례상 용어와 내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을 정의함 (안 제2조제4호, 제5호).
- 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 함 (안 제5조제2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창업자에 투자하는 것을”을 “벤처투자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벤처투자조합”이란 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지원)”을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란 <u>창업자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회사</u>를 말한다.</p> <p>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란 <u>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조합</u>을 말한다.</p> <p>6. (생략)</p> <p>제5조(기금의 용도) ① (생략)</p> <p>② 투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창업투자회사, <u>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u>벤처 투자를</u> ----- ----- 「<u>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0호에 따른 ----- -----.</p> <p>5. “<u>벤처투자조합</u>”이란 <u>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조합</u>을 말한다.</p> <p>6. (현행과 같음)</p> <p>제5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u>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u></p>

투자모태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2. (생략)

③ (생략)

제14조(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지원)

① 시장은 유망기술을 보유한 창업초기단계에 있는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할 목적으로 중소기업관련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모태조합-----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지원)

① -----

--- 벤처투자조합 -----

-----.

② (현행과 같음)